

‘文 민정수석’때 비서관 2명, 대법관 이어 헌법재판관 됐다

– 새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이은애…
사법부 점령한 ‘코드 인사’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9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중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석태(65세) 변호사와 이은애(52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에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동의를 필요 없이 본회의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지명했다.”고 했다. 외형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민변 회장 출신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것은 2007년 송두환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부장판사는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여성 법관이다. 그동안 헌법재판관 주류는 남성 법관 출신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코드 인사’란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2003~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김선수 변호사 역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했다. 대법관에 이어 헌법재판관에도 문 대통령과 노무현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비서관 출신이 오르게 된 것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인선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교감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의 양대 축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코드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확실한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현 정권이 선호하는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거 채워지게 될 것임을 알리는 인사’라고 말했다.

실제 현 정권에선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선에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바뀌게 된다. 앞서 문 대통

앞으로 바뀌는 헌법재판소 구성	현 정권 임명		신규 지명	
				
	유남석(61)	이석태(65)	이은애(52)	이신애(51)
출신	판사	변호사	판사	변호사(전 판사)
임기	2023년 11월	2024년 9월	2024년 9월	2023년 3월
인선 주체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현 정권서 교체 예정				
				
김이수(65)	안창호(61)	강일원(59)	조용호(63)	서기석(65)
판사	검사	판사	판사	판사
2018년 9월	2018년 9월	2018년 9월	2019년 4월	2019년 4월
민주통합당 (현 민주당)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여야 합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령은 작년 11월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다. 유 재판관은 진보 성향 법관도 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가 그가 중도 사퇴하자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를 정권이 현재 구성을 진보 성향으로 바꾸겠다는 확실한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선출로 임명된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도 9월 19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이들에 대한 후임 재판관은 통상 여야(與野)가 각각 한 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결정한다. 야당 추천 재판관을 제외한 2명은 현 여권이 원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내년 4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이 퇴임한다.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재판관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런 식의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통진당 해산심판 등 정치적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대형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현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특정 성향 인사로만 채워지게 된다면 국민이 현재를 최종 중재자 혹은 심판자로 인정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에선 이런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 현 정권에선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바꾸게 되는데 이미 8명을 바꿨다. 8명 중 절반인 4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다.

(조선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재판취소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과거사 54건 취소, 각하결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0일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 등 과거사 판결 54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결시켰다는 것이다. 각하결정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사를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도록 돼 있다.”면서 “이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됐으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앞서 2016년 4월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이 나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헌재는 대부분 이 조항을 문제삼는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이번 결정도 이 조항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백 소장은 1974년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신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2013년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재판 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락하면 헌법상 규정된 3심제를 위반하는 격이고, 최고법원의 위상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논란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헌법재판소

“대학교수 단결권 부정은 헌법불합치”...
교수노조 설립 ‘물꼬’



헌법재판소가 교수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후 3년 4개월 만에 법외 노조였던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지난 9월 3일 현재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즉각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초·중등 교원의 노조 설립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까지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 교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현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자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결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합리화된 진 않는다.”며 ‘입법형성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결권은 근로3권의 핵심 권리인데,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함으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창중,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과 비교해 보장받는 기본권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가입·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서다.

앞서 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4월 20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교원노조 가입범위 제한으로 반려됐다.

이에 교수노조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 등에 대해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12월 30일 현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중앙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前 수석재판연구원, 영장 기각 새 대법원 재판자료 문건 등 파기 '논란'

- 법원 “범죄 아니다.”… 검찰 압수수색영장 3차례 거둬 기각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법원이 대법원 재판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불법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둬 기각하는 사이 이 변호사가 문제의 문건을 모두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법원 재판 관련 자료 문건을 유출한 것은 부적절한 일이지만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지만,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과정에서 계속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9월 10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9월 7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1개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사실상 전부 기각된 것은 3번째였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운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이 의혹과 관련해 문건 1개에 대해서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 변호사가 지난 2월 퇴직하면서 선임·수석재판연구원 근무 시절 관여했던 대법원 재판 관련 자료를 대거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거둬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변호사가 대법원의 재판 자료를 반출·소지한 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그가 반출·소지한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돼야 할 사안이지 대법원의 입장에서만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사실관계 확정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된다고 단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영장 판사의 판단대로라면 수사기관이 취득하면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간 변호사가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미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은 불법반출로 이뤄진 것이고 수사는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순환논리로 수사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는 사이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반출해 소지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0일 오후 유 변호사에게 전화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문의했다.”면서 “그러나 유 변호사는 (지난 6일 2차 영장기각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유 변호사의 자료 파기 소식을 들은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수사 총책임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유 변호사 측은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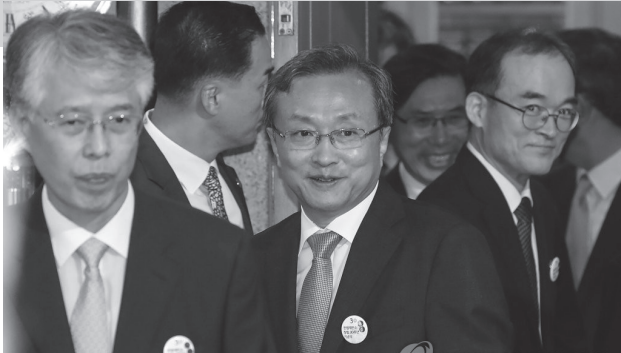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특정 사건번호로 검색해 나오는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했다.

(법률신문 인용)

새 헌재소장 후보에 유남석... '사법 투톱' 다 우리법연구회



법조인 동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유남석(61세·13기) 헌법재판관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유 헌재소장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5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자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일선 법원은 물론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를 두루 거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93년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됐다가 94년 서울고법 판사로 복귀했다.

2002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근무했고 2006년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고법 부장판사가 된 2008년에는 다시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광주고법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 지명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두 차례 헌재 파견 근무 등을 통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도 저술했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에 취임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다음 달 19일 퇴임한다.

(중앙일보 인용)